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 3. 24)

1. 심사경과

가. 2005. 3. 17 : 사천시장제출

나. 2005. 3. 1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13호)

다. 2005. 3. 24 :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최학림)

가. 제안이유

1) 재난전담기구 신설과 주택가격평가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등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명시하기 위함.

2)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축소하고,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의 한시정원(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

가)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 822명 → 837명(15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806명 → 821명(15명 증)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현행유지)

나) 승인 정원 : 15명(5급1, 6급2, 7급3, 8급5, 9급4)

○ 재난전담기구 인력 : 9명(5급1, 6급2, 7급1, 8급2, 9급3)

- 주택가격평가 및 조사인력 : 5명(7급1, 8급3, 9급1)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 : 1명(7급1)
-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명시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 『시행규칙』 → 『정원조례』로 조정
- 3) 한시정원 재규정
 - 가)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 10명(변동 없음)
 - 지급별 내역
 - 존속기한(2005. 6. 30까지) : 5급 1명(주민자치과장) → 상시정원 전환
 - 존속기한(2006. 12. 31까지) : 6명 → 7명(7급1명 증)
 - 존속기한(2007. 6. 30까지) : 3명(현행유지)
 - 분야별 한시정원
 - 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6명) : 토목·건축5급1, 토목8급1, 환경8급1, 건축9급1, 농업9급1, 기능10급1('06. 12. 31까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인력(1명) : 행정7급1('06. 12. 31까지)
 - 혁신·분권 전담인력(3명) : 행정6급1, 행정7급1, 행정8급1 ('07. 6. 30까지)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필상)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전담기구 신설과 주택가격 평가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등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명시하고, 한시기구인 주민

자치과를 담당급으로 축소하여 여유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자치과장의 한시정원(5급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증원인력(7급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822명에서 837명(집행기관정원 : 806명 → 821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 1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5명 증원되었으며,
- 증원된 15명(5급1, 6급2, 7급3, 8급5, 9급4)은 신설되는 재난전담기구 인력 9명과 주택가격 평가 및 조사인력 5명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 1명으로 증원되고,
-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0명(행정타운조성 추진인력 : 6명,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인력 : 1명, 혁신분권 전담인력 : 3명)을 재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조례를 일부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